

채택됨
06/02/20
브루맨/카사키안
전원찬성

결의안 20-62호

**코로나19와 그외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으로
글렌데일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하여
얼굴가리개에 대한 공공명령을 발령한
이전 결의안을 연장하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의 결의안**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이사회와 공공보건국은 국가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과 공공건강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특정한 공공 장소의 봉쇄와 출입 제한을 명령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글렌데일 주민이 지난 몇 달동안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려는 노력이 성공한 것을 충분히 증명하여 카운티의 보건관은 업소, 사회활동, 기타 활동의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복귀를 계속 허용하고 있다.

시정부가 재개하는 추가적 요소를 더하면서, 주민들은 대면 접촉을 늘리게 되고, 바이러스 확산이 늘어날 위험이 생기며 대면 접촉을 더욱 하게 되면서 한 사회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가지 보호방법은 얼굴 가리개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다.

신체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와 일반적인 표면소독 등의 기타 건강과 안전조치를 합치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여 최대한 안전한 방식으로 추가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점이 상당한 과학적 증거로 증명되고, 우리가 단체적으로 커뮤니티로 더 자주 나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치를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커뮤니티 주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 특히 나이나 건강상태로 인한 노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함으로써, 시정부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더 안전한 방식으로 업소를 개방하고 활동을 더 잘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활동이 늘어나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얼굴 가리개에 관한 공공명령을 수정한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항. 이 명령은 2020년 6월 3일 밤 11:59분에 발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게 되며, 결의안 20-55호를 수정하고 대신하게 된다.

- A. 이 명령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얼굴 가리개”는 천, 헝겊, 부드럽거나 투과되는 소재로 만들어지고 구멍이 없는 가리개이며, 코와 입과 하부얼굴 주위만 가리는 것을 뜻한다. 착용자의 눈이나 이마를 가리거나 불분명하게 하는 가리개는 얼굴 가리개가 아니다. 얼굴 가리개의 예는 스카프나 두건, 목 가리개, 티셔츠, 운동복, 수건으로 된 집에서 만들고 고무줄 등으로 고정시킨 가리개, 혹은 의료 등급이 아니어도 되는 마스크다.

얼굴 가리개는 공장에서 만들었거나 수제품이고 일반 가정용품에서 즉석으로 만든 것이어도 된다. 얼굴 가리개는 편안해야 하며, 착용자가 코로 숨을 쉴 수 있어야 하고 자주 고치지 않아야 하며, 얼굴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 사용할 때마다 버리지 않아도 되는 얼굴 가리개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주 세척해야 하고, 여분이 있어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마스크가 있어야 한다. 얼굴 가리개의 세척에 대한 정보는 CDC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how-to-wash-cloth-face-coverings.html>

N95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등 의료등급 마스크가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면, 이 명령에 의해 일반인이 그러한 마스크를 얼굴 가리개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면 안된다. 의료제공인과 구급요원을 위해 의료 등급 마스크를 따로 남겨두어야 한다.

숨을 내쉬기 쉽게 만들어진 한 방향 밸브가(보통 마스크의 앞면이나 옆면에 25센트 동전 크기만하고 높이 올린 플라스틱 원통) 포함된 마스크는 마스크에서 침방울이 배출되게 되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이 위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 명령으로 이 마스크는 얼굴 가리개가 아니고 이 명령의 요건에 준수하기 위해 사용되면 안된다. 얼굴 가리개를 만드는 방법이 나온 비디오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세척하는 방법은 CDC 웹사이트에 나오게 된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diy-cloth-face-coverings.html>

B. 시의 모든 사람은 가정, 주거유닛, 주거하는 장소 밖에 있을 때 (“주거지 외부”인 경우) 항상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1. 2세 이하 어린이(신생아 포함)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세부터 8세 어린이는 사용해도 되지만 안전하게 숨을 쉬고 숨이 막히거나 질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성인의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한다. 호흡기 문제가 있는 어린이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허가된 활동을 하는 특수 장애인이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을 받아들이고

http://www.lapublichealth.org/media/Coronavirus/docs/HOO/HO_Order_COVID-

[19_Safer_at_Work_and_in_the_Community_05292020_FINAL_WithAppendices.pdf](http://www.lapublichealth.org/media/Coronavirus/docs/HOO/HO_Order_COVID-19_Safer_at_Work_and_in_the_Community_05292020_FINAL_WithAppendices.pdf)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시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 규정을 전부 따르면 얼굴 가리개의 착용이 면제된다. 관련 업소에서, (i) 시설 입구나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규정의 통지문을 일반인과 직원들이 쉽게 볼수 있어야 한다. (ii) 시설에서 업무를 이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규정의 사본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iii) 요구받으면 업소는 규정을 시행한 증거를 이 명령을 집행하는 공권력에게 제공해야 한다.

2. 혼자 있거나 혹은 직장에 있는 등 건물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오직 가족이나 주거유닛 구성원과 있는 경우, (ii) 6피트 내에 아무도 없는 경우 (iii) 동료직원, 고객, 건물직원, 일반인 등 다른 사람과 앞으로 며칠 동안 몇 분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적은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만일 그 당시에 혼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곧 만질 수도 있는 표면이 오염될 위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일상적으로 있는 장소에서 일하거나 활동하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변하는 업무일정으로 책상이나 개인 사무실 혹은 도구, 공급품, 복사기, 컴퓨터 등 장비를 공유하는 공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모범적으로 제한없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주거 공간을 찾아가는 배관공, 교사, 간호보조인, 파출부 등 사람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 그곳에 사는 사람도 방문객이 가까이 있으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사무실에 혼자 있거나 공유하지 않고 미리 경고없이 다른 사람이 방문할 가능성이 적은 장소에 있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까운 장소에 들어오고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두 사람은 만나는 시간동안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음식이나 물건, 배분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그것을 할 때 혼자 있더라도 음식이나 물건을 준비하면서 얼굴 가리개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3. 자동차 안에 있고, 혼자 있거나 또는 같은 가족이나 거주지 유닛에 사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응급요원, 요식업 근무자, 가족이 아닌 사람과 접촉하는 등의 목적으로 창문으로 내려야만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4. 지방, 주, 연방규정, 혹은 직장 안전수칙에 따라 얼굴 가리개로 인해 업무와 관련된 위험이 생기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숨쉬기 곤란하거나, 의식이 없거나, 불구자거나, 도움없이 얼굴 가리개를 벗지 못하는 사람은 얼굴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업무로 인해 영업일에 상당한 시간동안 서있거나 걸어다니는 등 상당한 육체노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하면서 얼굴 가리개의 착용으로 위험이 생기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동료직원들이 적절하게 신체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작업장에서 6피트 거리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5. 바깥에서 혼자 있거나 또는 같은 가족이나 거주지 유닛에 사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얼굴 가리개를 눈에 보이게 두고 입과 코를 즉시 가릴 준비를 (목 근처에 걸어두기) 해야하며, 바깥에서 30 피트 내에(10 야드) 아무도 없어야 한다.(가족이나 거주지 유닛에 사는 사람이 아님)

같은 가족이나 거주지 유닛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있지 않아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을 때, 바깥에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 참고로, 30 피트는 자동차 두 대가 나란히 한 줄로 있는 길이 정도이다. 사람들이 서로 접근하고 몇 초만에 지나치게 되는 경우, 30피트 내에 있을 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사람이 보도, 공원, 좁은 길이나 오솔길, 기타 외부장소에 있을 때, 그리고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기타 운동하기, 서있기, 오토바이, 스케이트보드, 모페드 (모터달린 자전거), 스쿠터를 이용하는 등 교통수단을 타고 있을 때 이 30 피트 규칙은 적용된다. 거리를 좁히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6피트 내에 있을 때, 바이러스 확산에 더 큰 위험이 생기게 될 때, 30 피트 (10야드) 거리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이곳에서 사용된다. 활동을 더 허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미리 별다른 경고없이 서로 가까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30 피트 내에 있을 때 얼굴 가리개 착용이 필수적이 된다.

6. (i) 혼자있거나 가족이나 주거유닛 구성원과 같이 있는 경우 (ii) 실내나 실외에서 먹고 마시는 경우 (iii) 6피트 안에 아무도 없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식당같이 요식업종에서 주정부가 발령한 지침이나 별도 보건국 명령이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서버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다.

7. 질병통제국의 지침을 따르고 글렌데일 시정부 부서 방침으로 규정된 바 공공안전 구급요원은 보호용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C. 상기 나온 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얼굴 가리개는 의무적이다.

1. 보건관이나 지시에 따라 얼굴 가리개를 착용이 의무화된 경우 얼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다른 명령이나 지시의 조건이 이 명령보다 더 엄격한 경우도 포함한다.
2. 판매용이나 음식이나 다른 물건을 처리하고, 준비하고, 포장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가족이나 주거유닛의 구성원을 위해 음식이나 물건을 준비하는 경우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대중교통이나 준대중교통 차량, 택시, 개인 자동차 서비스나 차량공유 차량의 운전사나 운영자는 차량을 운전하고, 작동하고, 서있고, 앉아있을 때, 차에서 호흡 침방울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필요로 인해 다른 사람이 차에 있거나 없거나 얼굴 가리개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석이 신체적으로 분리된 점과 운전자들의 청소 규정으로 인해 대중교통 차량의 운전사나 운영자는 터미널에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차가 멈췄을 때, 타고 있는 손님이 없을 때, 얼굴 가리개를 빼고 있는 것이 허용된다.

D. 이 명령의 목적은 자택대피령으로 허가된 바에 따라 시에서 주거지 바깥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퍼트리거나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확실히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명령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고 일반인이 바이러스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 어려운 이들에게 필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에 끼치는 피해를 줄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명령의 모든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E. 고용주는 직원이 최소한 30분 동안 손을 씻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게 본인 부담으로 비 의료용 얼굴 가리개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필수 청소용품이 잘 보관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권고한 손 세정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고용주 부담으로 제공하는 살균제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모든 고용주는 고객, 방문객, 직원들이 서로간에 가능한 6피트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 모든 고객과 방문객은 직원과 고객을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 코와 입에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나 운영자는 이 명령으로 규정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출입이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소매업체는 모든 판매 시점에서 계산원과 고객을 분리하는 플렉시 글라스를

설치할 것을 권한다.

F. 코로나바이러스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치안관은 합법적으로 구금된 개인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인이 얼굴 가리개가 없으면, 치안관이 제공하게 된다.

2항.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로 이 공공명령의 조항이나 적용이 무효가 되면, 무효 조항 혹은 적용없이 실행하는 이 결의안이나 명령의 조항, 구절, 적용에 대해 그러한 무효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구절, 조항, 문장, 단어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선언한다.

3항.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으로 규정한 글렌데일 지방법원 1.20장에 의거하여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을 기소하기 위해 시 검찰청에 회부될 수 있다. 이 명령을 집행하면서 경관은 각자 재량을 사용하고 명령의 의도를 항상 염두에 둔다. 위반사항은 글렌데일 지방법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하고, 이에 규정한 집행방식과 함께 첫번째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 세번째 소환장은 \$2,000로 규정한다.

4항. 이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 더 엄격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2020년 6월 2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시장
시장

증명함:

Aram Adjemian

시 서기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SS.
글렌데일 시)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62호를 2020년 6월 2일에 개최한 특별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브롯맨, 드바인, 카사키안, 나자리안, 아가재니안
반대: 없음
결석: 없음
기권: 없음

Aram Adjemian
시 서기

양식을 승인함	
이름:	<u>마이클 J 가시아</u>
직분:	<u>시검사</u>
서명:	<u>Michael J. Garcia</u>
날짜:	<u>2020년 6월 3일</u>